

의안번호	2213414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 계 번호	25B545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3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독도의 날 (안 제14조 신설)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3호 및 제14조 신설(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3.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14.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 신설(독도의 날)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15조 신설(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에 관한 업무를 독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2	안 제14조 신설(독도의 날)	○	• 해양수산부 내 유사사례 참고																								
1	안 제5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기본계획의 내용)	—	• 미대상 －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중으로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 현행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 소요된 예산은 2억원('20년 기준) * ‘독도 통합관리 및 연차보고 작성’ 연구용역으로 제4차 독도 기본계획, 2020년 독도 연차보고서, 2021년 독도 시행계획 작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3	안 제15조 신설(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	—	• 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실시 중으로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독도 견학 및 방문 사업 현황] <table><tr><th>추진주체</th><th>사업명</th><th>내용</th></tr><tr><td>해양수산부</td><td>사회적 배려층 독도 탐방</td><td>사회적 배려층, 문화예술인 독도탐방</td></tr><tr><td>해양수산부, 경상북도</td><td>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체험</td><td>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독도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td></tr><tr><td>경상북도</td><td>일반인 대상 독도탐방</td><td>교사·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도 탐방</td></tr><tr><td>교육부</td><td>독도지킴이 학교 운영</td><td>학생 및 교원 대상 독도 교육 강화</td></tr><tr><td>교육부</td><td>독도 연수과정 운영</td><td>교원대상 독도 이론교육 및 탐방</td></tr><tr><td>교육부</td><td>독도 통합 홍보지침 확대 개선</td><td>독도 홍보 표준화를 통한 정부 홍보의 효율성 제고</td></tr><tr><td>국가보훈처</td><td>독도수호정신계승 교육과 협력학교 지정 및 지원</td><td>청소년 대상 교육·동아리 활동 지원</td></tr></table>	추진주체	사업명	내용	해양수산부	사회적 배려층 독도 탐방	사회적 배려층, 문화예술인 독도탐방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체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독도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경상북도	일반인 대상 독도탐방	교사·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도 탐방	교육부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학생 및 교원 대상 독도 교육 강화	교육부	독도 연수과정 운영	교원대상 독도 이론교육 및 탐방	교육부	독도 통합 홍보지침 확대 개선	독도 홍보 표준화를 통한 정부 홍보의 효율성 제고	국가보훈처	독도수호정신계승 교육과 협력학교 지정 및 지원	청소년 대상 교육·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주체	사업명	내용																									
해양수산부	사회적 배려층 독도 탐방	사회적 배려층, 문화예술인 독도탐방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체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독도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경상북도	일반인 대상 독도탐방	교사·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독도 탐방																									
교육부	독도지킴이 학교 운영	학생 및 교원 대상 독도 교육 강화																									
교육부	독도 연수과정 운영	교원대상 독도 이론교육 및 탐방																									
교육부	독도 통합 홍보지침 확대 개선	독도 홍보 표준화를 통한 정부 홍보의 효율성 제고																									
국가보훈처	독도수호정신계승 교육과 협력학교 지정 및 지원	청소년 대상 교육·동아리 활동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독도의 날 지정 및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 실시(안 제14조 신설)

- 본 추계에서는 매년 10월 25일¹⁾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기념행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바다의 날) 매년 5월 31일²⁾: 최근 5년간 기념행사 예산 2.8~3억원
 - (수산인의 날) 매년 4월 1일³⁾: 최근 5년간 1~2억원

[표 2] 해양수산부 소관 유사 기념일 행사 예산: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2022	2023	2024	2025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031-300)	바다의 날	300	280	300	300	300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수산인의 날	200	180	180	100	100

자료: 1.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해양수산부, 연도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각 연도

- 1) [참고자료]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
-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 따라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등에 연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독도의 날 기념행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3억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독도의 날 (안 제14조 신설)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념행사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시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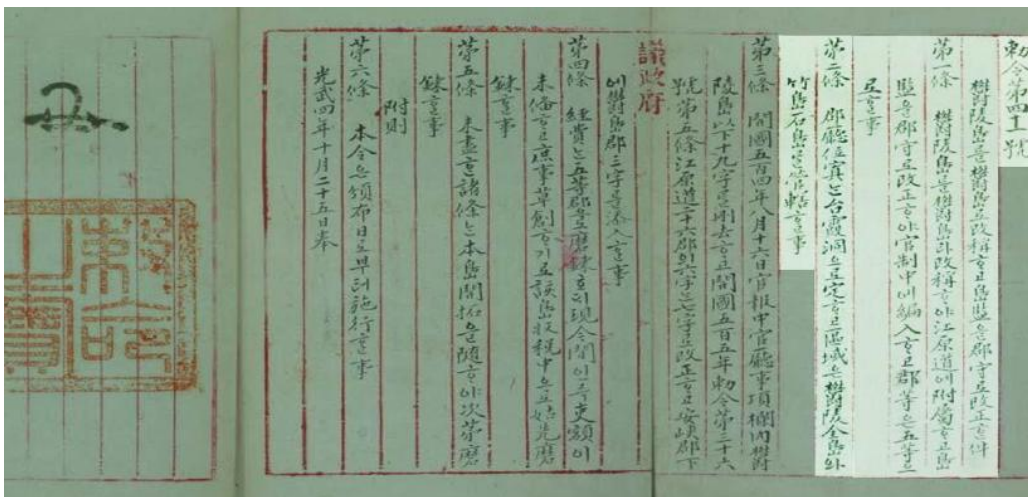
[참고자료]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⁴⁾

□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

-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 이와 같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



4)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 > [Q. 08]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

<<https://dokdo.mofa.go.kr/kor/dokdo/faq.jsp>>